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사안전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협력의 증진,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「해사안전기본법」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「해사안전기본법」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(안 제11조)

국제협력의 증진,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「해사안전기본법」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0. 2. ~ 11. 13.) 예정

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”를 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해사안전 관련 공공기관,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7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에 관한 업무
4. 법 제18조에 따른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
5. 법 제21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·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
6.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

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업무의 위탁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	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해사안전관련 공공기관,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법 제17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에 관한 업무
<신설>	4. 법 제18조에 따른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
<신설>	5. 법 제21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·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
<신설>	6.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
<신설>	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51) 773 - 5820